

3

영양보충제의 제품기준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영양연구부 정해당

영양보충제(nutritional supplements)는 통상 비타민 및 무기질, 아미노산 제품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나 식품법상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 정의가 없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식사보충제(dietary supplements)”가 많이 사용되는데, 미국은 1994년에 제정된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에서 비타민, 무기질제품, 아미노산제품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조식품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모두 식사보충제로 공식 정의하였다.

영양보충제를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영양보충”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 아미노산제품 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나아가 영양성분을 첨가 혹은 강화한 제품까지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을 약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나 표시범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식품에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첨가 혹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비타민 및 무기질이 첨가, 강화된 식품의 제조기준이나 표시기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제품을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약품으로 관리해 왔던 일본도 올 4월 1일부터는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타민 및 무기질제품을 식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된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경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특수영양식품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된 이유식류, 식이섬유가공식품, 조제유류, 영양보충용식품, 특정용도용식품 등의 식품”을 말한다. 개별식품별 규격 및 기준은 식품공전에 정해져 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 모두 유용성 표기가 허용되는 식품군으로 그 사용기준이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혀위, 과대 표시 및 광고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큰 제품군이다. “특수영양식품”的 경우 그 용어 자체로 인해 특수하게 영양적인 식품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특수영양식품내의 영양보충용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종류의 영양보충제는 식품의 안전성이나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잉섭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가 시작되었어야 한다. 이는 관련법규의 보강과 함께 철저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